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1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권수정, 임종국, 고병국,
김화숙, 이광호, 김달호,
이상훈, 문장길, 이태성,
최 선, 황인구, 전병주,
이호대, 채유미, 채인묵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및 산하 집행기관 등은 업무추진비를 각 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사무영역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음.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업무분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성과달성지표로 포함하는 등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 6개의 자회사 중 3곳은 이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 자회사 역시 행정
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음.

2. 주요골자

가.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자회사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
하고자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을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서울특별시 <u>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u>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u> ----- -----</p> <p>2. (현행과 같음)</p>